의안번호	제602호				
의 결	2014년 1월 24일				
연 월 일	(제326회)				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					
제출연월일	2014년 1월 8일					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602 제출연월일: 2014. 1. 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증원 분과 정책수요를 반영한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(안 제2조)
 - 1) 지방공무원 총수: 3,115명 → 3,137명, +22명
- 나.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 개정(안 제4조, 별표 3)
 - 1) 일반직공무원: 2,890명 → 2,893명, +3명(5급 이하)
 - 2) 연구직공무원: 7명 → 12명, +5명(연구사)
 - 3) 교육전문직원: 217명 → 231명, +14명
- 다. 전문경력관의 "직무군"을 "직위군"으로 수정(안 제4조)
- 라. 하급교육행정기관 명칭을 "지역교육청"에서 "교육지원청"으로 수정 (안 제2조, 별표 3, 별표 4)

3. 참고자료

- 가. 관계법령: 붙임과 같음
- 나. 예산조치: 별첨과 같음
- 다. 합 의: 해당부서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 - 2) 입법예고(2013. 12. 27. ~ 2014. 1. 2.): 특기할 사항 없음
 - 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 - 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 본문 중 "3,115명"을 "3,137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, "지역교육청 소속기관"을 "교육지원 청 소속기관"으로, "2,891명"을 "2,899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지역교육청"을 "교육지원청"으로, "지역교육청 소속기관"을 "교육지원청 소속기관"을 "교육지원청 소속기관"으로, "217명"을 "231명"으로 한다.
- 제4조 단서 중 "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"을 "직급별 정원(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"으로 한다.

별표 3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 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교육지원청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"지역교육청"을 인용한 경우에는 "교육지원청"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[별표 3]

기관별	총계	도의회	본청	교육지원청	공립
직급별	당세	사무처	(직속기관 포함)	(소속기관 포함)	각급학교
총계	3,137		-	-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2,893		-	-	
3급	1		1		
3·4급	4		4		
4급	19	1	17	1	
5급이하 소계	2,856		-	-	
전문경력관 소계	13		-	-	
연구직 계	12		-	•	
연구사 소계	12		-	-	
교육전문직원 계	231		-	-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19	12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200		-	-	

[별표 4]

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
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
		체정	4급	1	2015.2.28.	방과후학교지원단
	본청 일반직	행정		1		
본청			5급	1	2015 0 21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- 작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
		교육행정	6급	1	2013.8.31.	4/8 11 도의교육/8 구신인
			7급	1		
교육지원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 사업 전문상담사
합계		22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의 총수는 3,115명으로 그 내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

- 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2,891명(제3호에 따 른 정원은 제외 한다)
- 3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 육전문직원 : 217명
- 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의 단 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전문경력 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)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 (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)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[별표 3]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l	지역교육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<u>3,115</u>			-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<u>2,890</u>			_	
3급	1		1		
3·4급	4		4		

/비 ' 이 년
제2조(정원의 총수)
<u>3,137명</u>
1. (현행과 같음)
2, 교육지원청,, 교
육지원청 소속기관
:: <u>2,899명</u>
3, 교육지원청,
교육지원청 소속기관
:: <u>231명</u>
제4조(직급별 정원)
직급별 정원
(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)

게 저 아

[별표 3]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
총계	3,137			-	
정무직 계	1		1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<u>2,893</u>			-	
3급	1		1		
3·4급	4		4		

현 행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 청 (직속기관 포함)	지역교육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
4급	19	1	17	1		
5급이하 소계	<u>2,853</u>			_		
전문경력관 계	13			_		
연구직 계	<u>7</u>	-				
연구사 소계	<u>7</u>		•	-		
교육전문직원 계	<u>217</u>			-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19	12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<u>186</u>			-		

[별표 4]

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
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					
		행정	47	1	2015.2.28.	방과후학교지원단					
		8 8	4급	1							
본청	일반직	직						5급	1	2015.8.31.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
	교육	교육행정	6급	1	2013.6.31.	'주'8미프릭프팍'8쿠엔턴 					
			7급 1								
지역교육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					
1-11-4-8	한민 ⁴	파귝유요	OH	1/	2010.0.30.	사업 전문상담사					
합계			22								

개 정 안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도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교육지원청 (소속기관 포함)	공립 각급학교	
4급	19	1	17	1		
5급이하 소계	<u>2,856</u>			_		
전문경력관 계	13	-				
연구직 계	<u>12</u>	-				
연구사 소계	<u>12</u>			-		
교육전문직원 계	<u>231</u>			-		
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31		19	12		
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<u>200</u>			-		

[별표 4]

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
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
	행정 4급 1 2015.21		2015.2.28.	방과후학교지원단		
	본청 일반적 5: 교육행정 6	20.28	41	1		
본청		5급	1	2015 9 21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-	
		교육행정	6급	1	2013.6.31.	역정 조목파작 8구선인
			7급	1		
교육지원청	O]HLZ]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
TE-47 (157.8)	교인 기	1114 % S	В	17	2010.0.50.	사업 전문상담사
합계				22		

관계법령

- 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[시행 2013.12.12.] [대통령령 제24889호, 2013.12.4.]
- 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 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 - 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 - 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 -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- 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 -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 - 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 -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및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 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

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
④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전문경력관 규정

[시행 2014.1.1.] [대통령령 제25040호, 2013.12.30.]

- 제4조(직위군 구분) ① 제3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직위(이하 "지방전문경력관직위"라 한다)의 군(이하 "직위군"이라 한다)은 직무의 특성·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군, 나군 및 다군으로 구분한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직위를 직위군 중 어느 하나에 배정하여야 한다.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[시행 2013.12.30.] [법률 제12128호, 2013.12.30.]

- 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.
 -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,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2014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및 정책수요 증원분 반영
- 관련: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-4713(2013.10.18.)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지방공무원 22명(일반 지방공무원 8명, 교육전문직원 14명) 인건비

3. 관련조문

○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0조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- 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- 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 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- 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- ② ~ ④ 생략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: 2014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 적용 나. 추계 결과 (단위: 천원)

연간 인건비 추계		연도	별 인건비	추계		
산출기초	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합계
1. 정규직인건비	1,808,374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가. 일반지방공무원 57,198,000원× 8명=	457,584	381,320	471,312	485,452	500,016	1,838,100
나. 교육전문직원 96,485,000원×14명=	1,350,790	1,125,659	1,391,314	1,433,054	1,476,046	5,426,073

※ 2015년 이후 인건비는 처우개선분 3%를 적용하였으며 2014년은 10개월분만 추계

- 다. 재원조달방안: 보통교부금
- ※ 일반 지방공무원 8명, 교육전문직원 8명은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 인원에 포함
- 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- 6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행정과장 김왕년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14년)	2차년도 (2015년)	3차년도 (2016년)	4차년도 (2017년)	계
세 입	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보통교부금	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세 출	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정규직인건비	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재원 조달	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의존 재원	소 계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	국고보조금					
	보통교부금	1,506,979	1,862,626	1,918,506	1,976,062	7,264,173
	특별교부금					0
자체 수입	소 계					0
	자체수입					0
지방채						0
기 금						0
기타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0